



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계획 안내

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개요

-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원자재,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함
 -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
 - 서울중기청, 지자체(구청, 동사무소 등)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
 - 피해복구, 자금, 보증지원
 - 피해복구 : 피해현장 정리, 피해시설 복구
 - 자금지원 : 긴급경영안정자금, 소상공인지원자금
 - 보증지원 : 운전·시설자금, 소상공인 추가보증
 - ※ 자연재해 :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대설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
 - ※ 인적재난 : 화재, 붕괴, 폭발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



지원분야 및 대상

- 서울중기청, 지자체(구청, 동사무소 등)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

지원조건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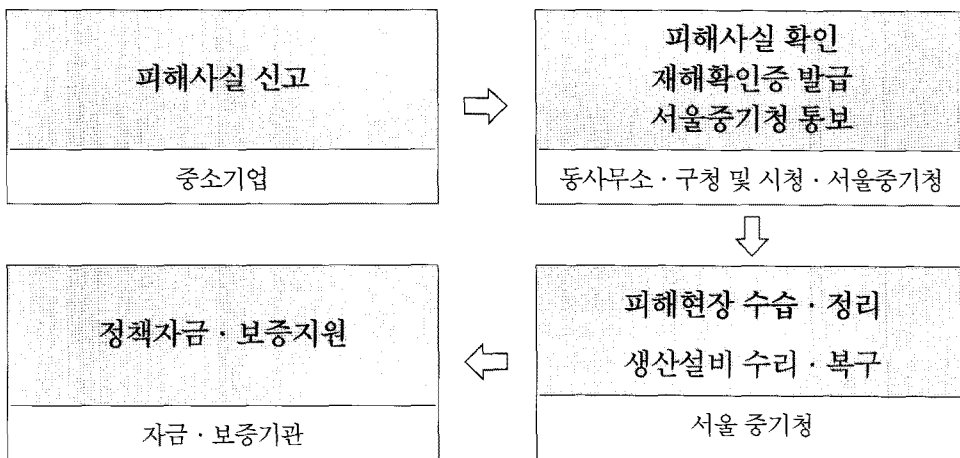
■ 신청기간

- 예산소진시까지

■ 지원조건 내용

- 피해복구 : 긴급 현장복구인력을 투입하여 피해현장 정리를 지원하고, 생산설비수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피해시설 복구를 지원(전액 국고)
- 자금지원 : 긴급경영안전자금(업체당 10억원, 중진공), 소상공인지원자금(업체당 5천만원, 서울신용보증재단) 지원
 - 기타 : 재해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
- 보증지원 : 운전·시설자금(합산) 추가보증(2억원, 신·기보), 소상공인 추가보증(5천만원(제조업은 1억), 신용보증재단)
 - 기타 : 보증요율 감면(일반 보증요율에서 0.5%p 차감)

■ 지원절차



■ 신청방법 및 서류

- 접수처 : 주민센터(동사무소)나 구청 지역경제과, 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
- 신청서류 : 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 피해 신고서
- 문 의 :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고종현 주무관(02-509-6748)